

難民等認定手続案内
난민 등 인정절차 안내
【第 6 版】
[제 6 판]

2024 年 12 月

2024 년 12 월

出入国在留管理庁

출입국재류관리청

はじめに 서문

難民認定手続案内（第 1 版）は、我が国の難民の地位に関する条約等への加入に伴い、難民認定手続を整備するため、1981 年に一部改正された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を基に編集したものです。

난민인정절차 안내(제 1 판)는 일본의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 등에 가입함에 따라 난민인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1981 년에 일부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편집된 것입니다.

その後、2004 年 6 月 2 日に公布された、仮滞在許可制度及び難民審査参与員制度の創設を内容とする「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内容を基に、加筆・修正を加えて第 2 版を発行、一時庇護手続について記載した第 3 版を発行、2009 年 7 月 15 日に公布された、新たな在留管理制度の導入を内容とする「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内容を基に加筆・修正を加えた第 4 版を発行、2016 年 4 月 1 日に施行された、不服申立ての手続を審査請求に一元化することなどを内容とする行政不服審査法の全部改正を受けて第 5 版を発行してまいりました。

이후 2004 년 6 월 2 일에 공포된 임시체류 허가 제도 및 난민심사참여원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추가 및 수정을 가해 제 2 판을 발행했으며, 임시보호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제 3 판을 발행했습니다. 2009 년 7 월 15 일에 공포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추가 및 수정을 가한 제 4 판을 발행했으며, 2016 년 4 월 1 일에 시행된 행정불복심사법 전체 개정(불복신청절차를 심사청구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에 따라 제 5 판을 발행해 왔습니다.

今般、2018 年 12 月 14 日に公布された、出入国在留管理庁の設置等を内容とする、「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法務省設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 2023 年 6 月 16 日に公布された、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制度の創設等を内容とする、「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及び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内容を基に加筆・修正を加えた第 6 版を発行するものです。

이번에 2018 년 12 월 14 일에 공포된 출입국재류관리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2023 년 6 월 16 일에 공포된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 특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추가 및 수정을 가한 제 6 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2024 年 12 月
2024 年 12 月

出入国在留管理庁
출입국재류관리청

目次 목차

第1 日本の難民認定制度及び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制度の概要	1
제1장 일본 난민인정제도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제도 개요	1
第2 難民の認定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た外国人が享受できる利益	3
제2장 난민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	3
1 永住許可要件の一部緩和	3
1 영주허가 요건의 일부 완화	3
2 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難民の認定を受けた外国人に限ります。）	3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 한함).....	3
第3 難民等認定手続.....	5
제3장 난민 등 인정절차.....	5
1 申請手続.....	5
1 신청절차.....	5
(1) 申請期間.....	5
(1) 신청기간.....	5
(2) 申請窓口.....	5
(2) 신청 창구.....	5
(3) 申請に必要な書類.....	5
(3) 신청 구비서류.....	5
(4) 難民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であることの立証.....	8
(4) 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것.....	8
2 仮滞在の許可	8
2 임시체류 허가.....	8
(1) 仮滞在許可による滞在.....	9
(1) 임시체류 허가에 따른 체류.....	9
(2) 仮滞在許可書.....	9
(2) 임시체류 허가서.....	9
(3) 仮滞在期間及び同期間の延長	9
(3) 임시체류 기간 및 연장.....	9
(4) 仮滞在許可の条件.....	9
(4) 임시체류 허가 조건.....	9
(5) 報酬を受ける活動の許可.....	10

(5) 보수를 받는 활동허가	10
(6) 仮滞在の許可の取消し	11
(6) 임시체류 허가 취소	11
3 難民認定証明書等の交付	12
3 난민인정증명서 등 발급	12
4 在留資格に係る許可	12
4 체류자격에 관한 허가	12
第4 審査請求	13
제4장 심사청구	13
1 審査請求手続	13
1 심사청구 절차	13
(1) 審査請求人	13
(1) 심사청구인	13
(2) 審査請求ができる期間	13
(2) 심사청구 기간	13
(3) 審査請求の窓口	13
(3) 심사청구 창구	13
(4) 審査請求に必要な書類	14
(4) 심사청구 구비서류	14
2 難民審査参与員	14
2 난민심사참여원	14
3 法務大臣の裁決	14
3 법무대신의 결정	14
第5 難民旅行証明書	15
제5장 난민여행증명서	15
1 申請窓口	15
1 신청 창구	15
2 申請に必要な書類	15
2 신청 구비서류	15
(1) 提出書類	15
(1) 제출서류	15
(2) 提示書類	16
(2) 제시서류	16
3 難民旅行証明書の有効期間	16

3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16
4	手数料	17
4	수수료	17
第 6	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許可	18
제 6 장	임시보호를 위한 상륙 허가	18
1	申請	18
1	신청	18
(1)	対象者	18
(1)	대상자	18
(2)	申請方法	18
(2)	신청방법	18
2	申請に必要な書類	18
2	신청 구비서류	18
(1)	提出書類	18
(1)	제출서류	18
(2)	提示書類	19
(2)	제출서류	19
3	一時庇護許可書の交付	19
3	임시보호 허가서 발급	19
付録	難民認定手続・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手続図解	20
부록:	난민인정절차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절차 흐름도	20

第1 日本の難民認定制度及び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制度の概要

제 1 장 일본 난민 인정제도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제도 개요

難民の地位に関する条約（以下「難民条約」という。）及び難民の地位に関する議定書（以下「議定書」という。）が 1982 年に我が国について発効したことに伴い、難民条約及び議定書の諸規定を国内で実施するため、難民認定制度が整備されました。この制度では、難民である外国人は、難民認定申請を行い、法務大臣から難民であると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た、難民条約に規定する難民としての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 및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함)가 1982 년 일본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각 규정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난민인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난민인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本案内でいう「難民」とは、難民条約第1条又は議定書第1条の規定により定義される難民を意味し、それは、人種、宗教、国籍、特定の社会的集団の構成員であること又は政治的意見を理由として迫害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いう十分に理由のある恐怖を有するために国籍国の外にいる者であって、その国籍国の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か又はそれを望まない者とされています。

이 안내에서 말하는 ‘난민’이란 난민협약 제 1 조 또는 의정서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난민을 의미하며, 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難民認定手続とは、外国人がこの難民の地位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審査し決定する手続です。
난민인정절차란 외국인이 이 난민 지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一方で、近年、紛争避難民のように、難民条約上の難民には該当しないものの、難民と同様に保護を必要とする外国人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受け、2023 年 12 月 1 日、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制度が開始されました。この制度では、本邦にある外国人は、難民認定申請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申請を行い、法務大臣から補完的保護対象者であると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難民認定申請をした外国人について、難民の認定をしない処分がされる場合に、当該外国人が補完的保護対象者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補完的保護対象者として認定されます。）。

한편, 최근 전쟁 피난민처럼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난민과 동일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23 년 12 월 1 일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신청을 제출하고 법무대신으로부터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난민인정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인정을 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외국인이 보완적 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됩니다.)

本案内でいう「補完的保護対象者」とは、難民条約上の難民以外の者であって、難民条約上の要件のうち、「迫害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理由が、人種、宗教、国籍、特定の社会的集団の構成員であること又は政治的意見であること」以外の要件を満たす者とされています。

이 안내에서 말하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 아닌 자로서, 난민협약상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인 것’ 이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なお、本案内において、難民と補完的保護対象者を合わせて「難民等」といい、難民認定手続と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手続を合わせて「難民等認定手続」といいます。

참고로, 이 안내에서 난민과 보완적 보호대상자를 합쳐 ‘난민 등’이라고 하며, 난민인정절차와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절차를 합쳐 ‘난민 등 인정절차’라고 합니다.

第2 難民の認定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た外国人が 享受できる利益

제2장 난민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

難民の認定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た外国人は、次のような利益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난민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永住許可要件の一部緩和
- 1 영주허가 요건의 일부 완화

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が永住許可を受けるためには、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받으려면

- ①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품행이 양호할 것
- ②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술을 갖출 것

の2つの要件を満た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

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또한 해당자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しかし、難民の認定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て在留する外国人は、このうち②の要件を満たさない場合であっても、法務大臣の裁量により永住許可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중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라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難民の認定を受けた外国人に限ります。）
-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 한함)

難民の認定を受けた外国人が外国に旅行しようとするときは、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難民旅行証明書を所持する外国人は、その証明書に記載されている有効期間内であれば、原則として何度でも日本から出国し、日本に再入国することができます（申請手続等については、本案内第5を参照。）。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외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하고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 등은 이 안내 제5장 참고)

なお、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た外国人が外国に旅行しようとするときは、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は受けられないものの、再入国許可書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외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은 받을 수 없으나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第3 難民等認定手続

제3장 난민 등 인정절차

1 申請手続

1 신청절차

(1) 申請期間

(1) 신청기간

難民等認定申請の期間について制限する規定はありません。

난민 등 인정신청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申請窓口

(2) 신청 창구

難民等認定申請は、申請者の住居地（住居地がないときは宿泊先等の所在地。以下「住居地等」といいます。）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及び出張所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난민 등 인정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경우 숙박지 등 소재지. 이하 ‘거주지 등’이라 함)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申請は、申請者本人が自ら出頭して行ってください。ただし、申請者が16歳未満である場合や病気その他の理由により自ら出頭できない場合は、父母、配偶者、子又は親族がその者に代わって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족이 해당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における窓口については、本案内の最終ページを参照してください。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지국의 창구 정보는 이 안내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3) 申請に必要な書類

(3) 신청 구비서류

申請には、次の書類が必要です。なお、怪我や身体の障害などの特段の事情があるため難民・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申請書の記載ができない外国人は、申請書に代えて申請書に記載すべき事項を入国審査官又は難民調査官に陳述してもよ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상이나 신체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난민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신청서에 기재할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 대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출입국심사관 또는 난민조사관에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① 提出書類
제출서류

- ア 難民・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申請書（入管庁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ほか、窓口でも配布しています。） 1 通
난민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신청서(입국관리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1 부
※過去に難民等の認定をしない処分を受けたことがある外国人は再申請用の申請書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ので、御留意ください。
※과거에 난민 등 인정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재신청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イ 申請者が難民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資料（難民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陳述書を含む。） 1 通
신청자가 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임을 주장하는 진술서 포함) 1 부
- ウ 写真（以下の要件を満たし、裏面に氏名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 1 葉
사진(아래 요건을 충족하며, 뒷면에 성명이 기재된 것) 1 장
(ただし、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については、2 葉)
(단,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의 경우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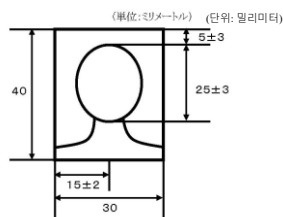
【要件】

[요건]

- (ア) 申請者本人のみが撮影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
신청자 본인만 촬영된 것

- (イ) 写真の寸法
사진 크기

縁を除いた部分の寸法が、下記の寸法を満たしたものであること（顔の寸法は、頭頂部（髪を含む。）からあご先まで）
테두리를 제외한 부분의 크기가 아래 크기에 따른 것(얼굴 크기는 머리 꼭대기(머리카락 포함)부터 턱 끝까지)



(ウ) 無帽で正面を向いたものであること(宗教上又は医療上の理由により本要件を満たす写真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特段の事情がある場合、当該事情に係る陳述書(任意様式)を提出してください。)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향한 것(종교적 또는 의료적 이유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진을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정에 관한 진술서(임의 양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エ) 背景(影を含む。)がないものであること

배경(그림자 포함)이 없는 것

(オ) 鮮明であること(写真の焦点が合っているもの、しみ、汚れ、穴等がなく、顔写真に影がないもの、衣服や頭髮等により目、鼻、口等が隠れていないもの、背景がないもの等。出入国在留管理庁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ている申請用写真の見本・事例集を参照してください。)

선명한 것(사진의 초점이 맞은 것, 얼룩, 오염, 구멍 등이 없으며, 얼굴 사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옷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눈, 코, 입 등이 가려지지 않은 것, 배경이 없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 게시된 신청용 사진의 샘플 및 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カ) 提出の日前 6 か月以内に撮影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入院中のため写真を撮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など、6 か月以内に撮影した写真を提出できないことについて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場合には、可能な限り新しい写真を提出してください。)

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입원 중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등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エ 旅券又は在留資格証明書を提示できない者にあつては、その理由を記載した書類 1通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提示書類

제출서류

ア 中長期在留者にあつては、旅券及び在留カード

중장기 체류자의 경우, 여권 및 재류카드

イ 特別永住者にあつては、旅券及び特別永住者証明書

특별영주자의 경우, 여권 및 특별영주자증명서

ウ 中長期在留者及び特別永住者以外の者にあつては、旅券又は在留資格証明書

중장기 체류자 및 특별영주자 이외의 경우,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

(監理措置中の者にあつては、監理措置決定通知書)

(감독 조치 중인 경우, 감독조치결정통지서)

(仮放免中の者にあつては、仮放免許可書)
(임시 석방 중인 경우, 임시석방허가서)

エ 仮上陸の許可、船舶観光上陸の許可、乗員上陸の許可、緊急上陸の許可、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又は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ている者にあつては、当該許可書
임시상륙허가, 선박관광상륙허가, 승무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조난으로 인한
상륙허가 또는 임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해당 허가서

- (4) 難民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であることの立証
- (4) 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것

難民等の認定は、申請者から提出された資料や申請者の供述等に基づいて行われます。したがって、申請者は、難民等であることについて自ら立証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なお、資料（陳述書を含む。）が外国語で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資料の訳文を添付してください。
난민 등의 인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나 신청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이 난민 등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진술서 포함)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해당 자료의 번역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申請者の提出した資料のみでは十分な立証が得られない場合には、難民調査官が公務所等に照会するなどして、申請者の申し立てる事実の有無について調査し、難民等の認定が適正に行われるように努めます。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 난민조사관은 관공서 등에 문의하는 등 신청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유무를 조사하여 난민 등 인정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2 仮滞在の許可
- 2 임시체류 허가

不法滞在者等の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から難民等認定申請があつたときは、その者の法的地位の安定を図るため、当該外国人が本邦に上陸した日（本邦にある間に難民等となる事由が生じた者にあつては、そ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 6 か月以内に難民等認定申請を行ったものであること、迫害を受けるおそれのあつた領域から直接本邦に入ったものであることなどの一定の要件を満たす場合には、仮に本邦に滞在することを許可し、その間は退去強制手続が停止されます。

불법 체류자 등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으로부터 난민 등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 상륙한 날(일본에 체류 중 난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난민 등 인정신청을 한 경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직접 일본에 입국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일본에 체류할 것을 허가하며, 그 기간 동안 퇴거강제절차가 중단됩니다.

なお、仮滞在許可の判断は、難民等認定申請者から提出のあつた難民・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申請書等の書類により行いますので、別途、仮滞在許可のための申請は必要ありません。

임시체류 허가의 판단은 난민 등 인정신청자가 제출한 난민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임시체류 허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1) 仮滞在許可による滞在

(1) 임시체류 허가에 따른 체류

仮滞在許可を受けると一時的に退去強制手続が停止され、仮滞在期間の経過等により当該許可が終了するまでの間は、適法に本邦に滞在することができます。

임시체류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퇴거강제절차가 중단되며, 임시체류 기간의 경과 등 해당 허가가 종료될 때까지 적법하게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仮滞在許可書

(2) 임시체류 허가서

法務大臣が仮滞在の許可をした外国人には、仮滞在許可書が交付されます。

법무대신이 임시체류 허가를 한 외국인에게는 임시체류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許可を受けている間は、この許可書を常に携帯する必要があります。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은 이 허가서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3) 仮滞在期間及び同期間の延長

(3) 임시체류 기간 및 연장

仮滞在期間は、原則として6月です。

임시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仮滞在期間の更新申請は、許可期限の10日前から、申請者の住居地等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及び出張所で受け付けています。また、申請書は、入管庁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ほか、各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及び出張所の窓口で配布しています。

임시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허가 기한 10 일 전부터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에서 접수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출입국관리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각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における窓口については、本案内の最終ページを参照してください。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지국의 창구 정보는 이 안내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仮滞在許可の条件

(4) 임시체류 허가 조건

仮滞在許可を受けた者は、住居や行動範囲が制限されるほか、難民調査官から出頭の要請があった場合には、指定された日時、場所に出頭して、難民等認定手続へ協力する義務が課されるなど、種々の条件が付されます。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거주지 및 행동 범위가 제한되는 외에도, 난민조사관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방문하여 난민 등 인정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5) 報酬を受ける活動の許可

(5) 보수를 받는 활동허가

仮滞在の許可を受けた者が生計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範囲で行う報酬を受ける活動について、相当と認められるときには許可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① 申請期間

신청기간

仮滞在許可を受けた日から当該許可の満了日までの間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허가 만료일까지의 기간

② 申請窓口

신청 창구

申請者の住居地等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及び出張所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申請に必要な書類

신청 구비서류

ア 報酬を受ける活動許可申請書（入管庁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ほか、窓口でも配布しています。）

1 통

보수를 받는 활동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1 부

イ 労働基準法第 15 条第 1 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 5 条に基づき、労働者に交付される労働条件を明示する文書

노동기준법 제 15 조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

ウ 就業予定機関について、本邦内に本店又は事業所等があることを疎明する資料（パンフレット、登記事項証明書など）

고용예정 기관에 대해 일본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 등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팸플렛, 등기사항증명서 등)

エ 就業予定機関の直近 3 ヶ月分の給与所得・退職所得等の所得税徴収高計算書の写し

고용예정 기관의 최근 3 개월분 급여 소득 및 퇴직 소득 등 소득세 징수액계산서 사본

オ 申請者の収入又は資産を疎明する資料
신청자 소득 또는 자산을 소명하는 자료

カ 同居者等の収入又は資産を疎明する資料（申請者と生計を一にする同居者等がいる場合）
동거자 등 소득 또는 자산을 소명하는 자료(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 등이 있는 경우)

キ 住居の賃貸借契約書の写し（賃貸借契約を締結している場合）
주거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ク 各種団体や個人からの金銭援助を受けていること及び援助の内容を疎明する資料（各種団体や個人からの金銭援助を受けている場合）
각종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 및 지원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각종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ケ 写真（写真の規格については、前記 1(3)の写真の要件を参照してください。）
사진(사진 규격은 위 1 (3)의 사진 요건 참고)

④ 報酬を受ける活動の状況に関する届出
보수를 받는 활동 현황에 대한 신고

報酬を受ける活動の許可を受けた者は、報酬を受ける活動の許可を受けた日又は直近の届出の日から6月を超えない範囲で、住居地等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及び出張所に出頭し、「報酬を受ける活動の状況に関する届出書」（入管庁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ほか、窓口でも配布しています。）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보수를 받는 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보수를 받는 활동허가를 받은 날 또는 가장 최근의 신고일로부터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에 방문하여 ‘보수를 받는 활동 현황에 대한 신고서’(출입국관리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仮滞在の許可の取消し

(6) 임시체류 허가 취소

仮滞在の許可を受けた者がその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た場合、許可なく報酬を受ける活動を行った場合、不正に難民等認定を受ける目的で偽変造された資料を提出した場合、虚偽の陳述をした場合等には仮滞在の許可が取り消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난민 등 인정을 받기 위해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에는 임시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難民認定証明書等の交付

3 난민인정증명서 등 발급

法務大臣が難民であると認定した外国人には、難民認定証明書が交付され、補完的保護対象者であると認定した外国人には、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証明書が交付されます。

법무대신이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며,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難民認定申請を行った者が難民として認定されなかった場合でも、補完的保護対象者として認定された場合には、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証明書が交付されます。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難民等としての各種の保護措置を受ける際に、難民等であることの証明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これらの証明書を提示してください。

난민 등으로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때 난민 등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이러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在留資格に係る許可

4 체류자격에 관한 허가

難民等として認定された外国人が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であるときは、一定の退去強制事由に該当せず、かつ、一定の刑罰法令違反により懲役等に処されたことがないときなど、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には、定住者の在留資格が一律に付与されます。

난민 등으로 인정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인 경우, 특정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형사처벌 법령위반으로 징역 등에 처해진 적이 없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주자 체류자격이 일괄적으로 부여됩니다.

これにより、3月を超える在留期間となった外国人には在留カードが交付されます。

이로써 3 개월을 초과한 체류기간이 된 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第4 審査請求

제4장 심사청구

1 審査請求手続

1 심사청구 절차

(1) 審査請求人

(1) 심사청구인

難民等認定申請をしたものの認定されなかった外国人や難民等の認定を取り消された外国人は、法務大臣に対し、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난민 등 인정신청을 한 자 중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 또는 난민 등 인정 취소된 외국인은 법무대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審査請求ができる期間

(2) 심사청구 기간

審査請求期間は、難民等の認定をしない旨の通知又は難民等の認定を取り消した旨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7日以内となっています。ただし、天災その他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ときは、7日経過後であっても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심사청구 기간은 난민 등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 또는 난민 등 인정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審査請求の窓口

(3) 심사청구 창구

審査請求は、難民等認定申請の場合と同様、審査請求人の住居地等を管轄する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及び出張所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심사청구는 난민 등 인정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심사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なお、代理人による審査請求が認められるほか、必要書類を郵送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もできます。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支局における審査請求窓口については、本案内の最終ページを参照してください。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심사청구가 인정되며,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지국의 창구 정보는 이 안내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4) 審査請求に必要な書類
- (4) 심사청구 구비서류

次の書類を提出してください。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審査請求書（窓口に備え付けてあります。） | 1 通 |
| 심사청구서(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 1 부 |
| ② 審査請求の理由を立証する資料（陳述書で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 1 通 |
| 심사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진술서도 가능) | 1 부 |

- 2 難民審査参与員
- 2 난민심사참여원

難民審査参与員は、人格が高潔であつて、審査請求に関し公正な判断をすることができ、かつ、法律又は国際情勢に関する学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任命されています。また、難民審査参与員を「審理員」とみなして行政不服審査法が適用され、難民審査参与員は審理を主宰し法務大臣に意見を述べることとなっています。なお、法務大臣は、審査請求の裁決に当たっては、難民審査参与員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されています。

난민심사참여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심사청구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법률 또는 국제정세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됩니다. 또한, 난민심사참여원은 ‘심리원’으로 간주되어 행정불복심사법이 적용되며, 난민심사참여원은 심리를 주재하고 법무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무대신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시 난민심사참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3 法務大臣の裁決
- 3 법무대신의 결정

法務大臣が、審査請求には理由がある旨の裁決をし、難民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と認定された外国人には、それぞれ難民認定証明書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証明書が交付されます。

법무대신이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각각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難民等として認められた外国人が在留資格未取得外国人であるときは、一定の退去強制事由に該当せず、かつ、一定の刑罰法令違反により懲役等に処されたことがないときなど、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場合には、定住者の在留資格が付与されます。

난민 등으로 인정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특정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정 형사처벌 법령위반으로 징역 등에 처해진 적이 없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주자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これにより、3月を超える在留期間となった外国人には在留カードが交付されます。
이로써 체류기간이 3 개월을 초과한 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第5 難民旅行証明書

제 5 장 난민여행증명서

難民の認定を受けて在留している外国人が日本から出国しようとするときは、法務大臣から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난민으로 인정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하려는 경우, 법무대신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申請窓口

1 신청 창구

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申請の窓口は、難民認定申請の窓口（第3の1の（2）参照。）と同じです。申請は本人出頭が原則ですが、申請者が16歳未満の場合や病気その他の理由により自ら出頭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父母、配偶者、子又は親族がその者に代わって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この場合において、代理申請者は、旅券、在留カード等、出生証明書、住民票の写し等代理資格を疎明する資料を提示してくださ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창구는 난민인정 신청창구(제3장의 1 (2) 참고)와 동일합니다. 신청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나 질병 기타 사유로 본인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족이 해당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자는 여권, 재류카드 등,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대리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申請に必要な書類

2 신청 구비서류

(1) 提出書類

(1) 제출서류

ア 難民旅行証明書交付申請書（入管庁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ほか、窓口でも配布しています。） 1通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입국관리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1부

イ 写真（提出の日前6か月以内に撮影された4.5 cm × 3.5 cmの無帽、正面上半身のもので、裏面に氏名及び生年月日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 2葉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4.5cm × 3.5cm 의 모자 없는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뒷면에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 2장

ウ 難民旅行証明書（既に交付を受けている場合）

난민여행증명서(이미 발급받은 경우)

エ 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いる者が同証明書を提出できない場合にあっては、その理由を記載した書類 1通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1 부

オ 旅券又は在留資格証明書を提示できない者にあつては、その理由を記載した書類 1 通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1 부

(2) 提示書類

(2) 제시서류

ア 難民認定証明書
난민인정증명서

イ 中長期在留者にあつては、旅券（日本国政府の発行した難民旅行証明書を除く。）及び
在留カード
중장기 재류자의 경우, 여권(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제외함) 및 재류 카드

ウ 特別永住者にあつては、旅券及び特別永住者証明書
특별영주자의 경우, 여권 및 특별영주자증명서

エ 中長期在留者及び特別永住者以外の者にあつては、旅券又は在留資格証明書
중장기 체류자 및 특별영주자 이외의 자의 경우,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

(注) 代理申請の場合であっても、申請者本人の在留カードや旅券などの提示が必要になります。代
理人が在留カードや旅券などを預かっている間、代理人はこれらの写しを作成し、適宜、代理
人の氏名及び代理人による手続中である旨を記載の上、申請者にこれらの写しを携帯させるよ
うにしてください。

(주)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의 재류 카드나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재류
카드나 여권 등을 보관 중인 경우, 대리인은 해당 사본을 작성하여 적절히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인을 통한 절차 중임을 기재한 후, 신청자에게 해당 사본을 소지하도록 하십시오.

3 難民旅行証明書の有効期間

3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難民旅行証明書の有効期間は、難民旅行証明書の発行の日から 5 年です。有効期間中は、原則とし
て何度でも日本から出国し、日本に再入国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日本での在留期間の残り
が 5 年未満の場合等で、難民旅行証明書の有効期間とは別に「日本に入国できる期限」が定められ
ているときは、その期限までに日本に再入国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日本に再入国できる期限は、
難民旅行証明書の 3 ページに記載されていますので、必ずこれを確認し、難民旅行証明書の有効期
間と混同することのないように注意してください。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 년입니다. 유효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하고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체류기간이 5 년 미만인 경우 등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별도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한까지

일본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한은 난민여행증명서의 3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手数料

4 수수료

難民旅行証明書の交付を受ける際には、所要の額を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外国で難民旅行証明書の有効期間の延長手続を行う場合にも、所要の手数料をその国の通貨で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필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통화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第6 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許可

제 6 장 임시보호를 위한 상륙 허가

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許可は、船舶等に乗っている外国人が難民条約に規定する理由その他これに準ずる理由により、難民に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場合、又は船舶等に乗っている外国人が補完的保護対象者に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場合であって、その外国人を一時的に上陸させることが相当であると思料するときに、入国審査官が許可するもので、これは、「国が取り急ぎ保護する（領土的庇護）」ための緊急措置として与えられるものです。

임시보호를 위한 상륙 허가는, 선박 등에 승선한 외국인이 난민 협정에 규정된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난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선박 등에 승선한 외국인이 보완적 보호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상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입국심사관이 허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긴급한 보호(영토적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1 申請

1 신청

(1) 対象者

(1) 대상자

船舶又は航空機に乗っている外国人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2) 申請方法

(2) 신청방법

到着した空海港に所在する出入国在留管理官署において、申請者本人が自ら申請してください。ただし、申請者が 16 歳未満である場合や病気その他の理由により自ら申請できない場合は、申請者に同行する父母、配偶者、子又は親族その他の同行者等が代わって申請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도착한 공항 또는 항구에 위치한 출입국재류관리관청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16 세 미만인 경우나 질병 기타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와 동행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족 기타 동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申請に必要な書類

2 신청 구비서류

(1) 提出書類

(1) 제출서류

ア 外国人入国記録（通常 E/D カードと呼ばれています。航空機内で配布される場合もありますが、空港の場合であれば、航空会社のカウンターや入国審査ブースで入手することがで

- きます。)
- 외국인입국기록(일반적으로 E/D 카드라고 불림. 항공기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항에서는
항공사 카운터나 입국심사 부스에서 받을 수 있음) 1 통
1 부
- イ 申告書(身分事項や申請の理由等を記載するもので、空海港に所在する出入国在留管理官
署で配布しています。) 1 통
신고서(신분사항,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공항이나 항구에 위치한 출입국재류관리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1 부
- ウ 写真(所持している場合) 2 葉
사진(소지 중인 경우) 2 장
- エ 庇護を求める理由があることを証明する資料(所持している場合) 1 통
보호를 요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소지 중인 경우) 1 부
- (2) 提示書類
- (2) 제출서류
- ア 旅券等の渡航文書(所持している場合)
여권 등 여행 문서(소지 중인 경우)
- イ 身分を証明する文書(所持している場合)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소지 중인 경우)

3 一時庇護許可書の交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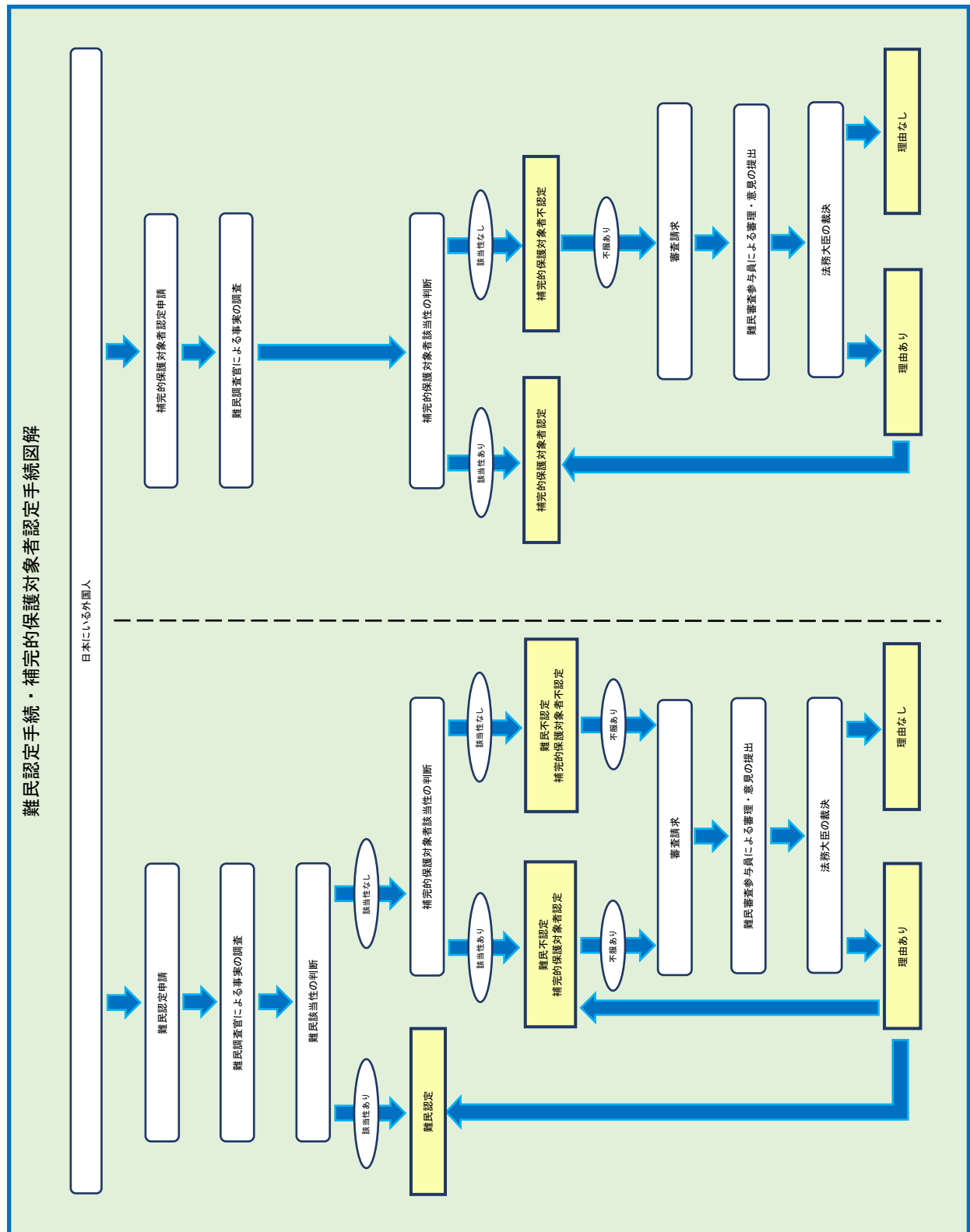
3 임시보호 허가서 발급

審査の結果、一時庇護のための上陸が許可された場合は、一時庇護許可書が交付されます。同許可
書には、上陸期間、住居及び行動範囲等の上陸のための条件が記載され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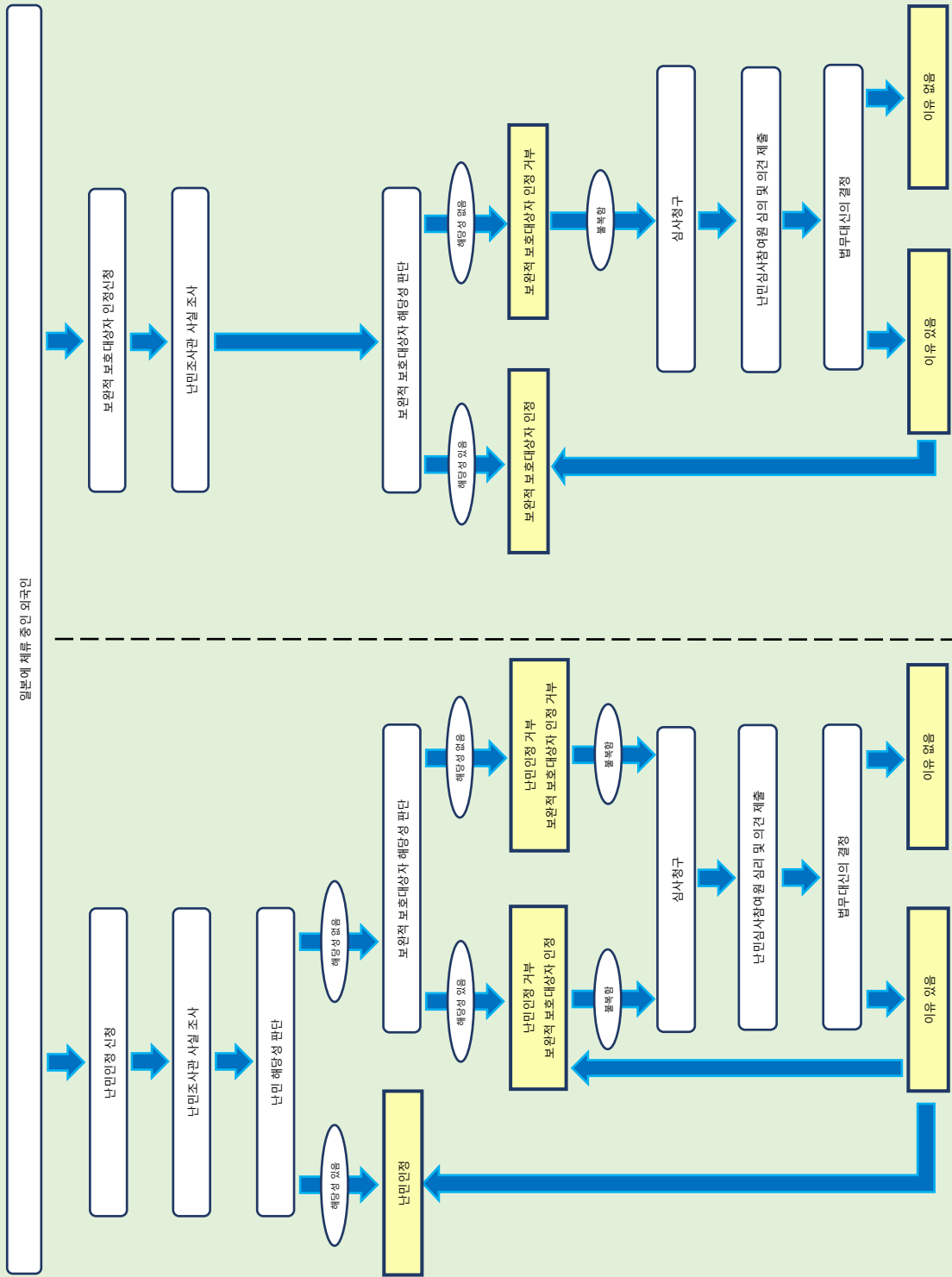
심사 결과 임시보호를 위한 입국이 허가된 경우, 임시보호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해당 허가서에는 입국
기간, 거주지 및 행동 범위 등 입국 조건이 기재됩니다.

付録 難民認定手続・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手続図解

부록: 난민인정절차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절차 흐름도



난민 인정 절차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 절차 흐름도



(難民認定申請及び補完的保護対象者認定申請の窓口)
(난민인정신청 및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신청 접수 창구)

札幌出入国在留管理局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		審査部門 심사부서
仙台出入国在留管理局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審査第一部門 심사제 1 부서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難民調査第一部門 난민조사제 1 부서
	成田空港支局 나리타공항 지국	審査管理部門 심사관리부서
	羽田空港支局 하네다공항 지국	審査管理部門 심사관리부서
	横浜支局 요코하마 지국	就労・永住審査部門 취업 및 영주심사부서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難民調査部門 난민조사부서
	中部空港支局 중부공항 지국	審査管理部門 심사관리부서
大阪出入国在留管理局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永住審査部門 영주심사부서
	関西空港支局 간사이공항 지국	審査管理部門 심사관리부서
	神戸支局 고베 지국	審査部門 심사부서
広島出入国在留管理局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就労・永住審査部門 취업 및 영주심사부서
高松出入国在留管理局 다카마쓰 출입국재류관리국		審査部門 심사부서
福岡出入国在留管理局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審査管理部門 심사관리부서
	那覇支局 나하 지국	審査部門 심사부서

(審査請求の窓口)
(심사청구 창구)

札幌出入国在留管理局 사파로 출입국재류관리국	審査部門 심사부서
仙台出入国在留管理局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審査第二部門 심사제 2 부서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難民審判部門 난민심판부서
成田空港支局 나리타공항 지국	第二審判部門 제 2 심판부서
羽田空港支局 하네다공항 지국	審判部門 심판부서
横浜支局 요코하마 지국	審判部門 심판부서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難民審判部門 난민심판부서
中部空港支局 중부공항 지국	審査管理部門 심사관리부서
大阪出入国在留管理局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審判部門 심판부서
関西空港支局 간사이공항 지국	審判部門 심판부서
神戸支局 고베 지국	審査部門 심사부서
広島出入国在留管理局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審判部門 심판부서
高松出入国在留管理局 다카마쓰 출입국재류관리국	審査部門 심사부서
福岡出入国在留管理局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審判部門 심판부서
那覇支局 나하 지국	審査部門 심사부서